

부산지방법원 2024. 10. 29 선고 2024가단334906 판결 [보증금반환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9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8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정우

별지